

의안번호	제369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3년 8월 29일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의안 번호	369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호우 피해 관련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소유하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호우 피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 중 호우로 전파, 반파, 침수된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 호우 피해 주민

※ 피해구분 기준은 202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함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이하 “사망자” 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감면세목 및 감면율 내용

가. 취득세

-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호우 피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 중 호우로 전파, 반파, 침수된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한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주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련 법령(발취)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2015.12.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2019. 8. 27.>

-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

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전문개정 2019. 12. 31.]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9. 12. 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초과 1,300만원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초과 3,900만원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초과 6,400만원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 12. 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2019. 12. 31.>

제147조(부과·징수)

-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18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5.>

제20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호우 피해 주민 등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23년 7월 호우 피해 주민과 사망자·유가족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취득세(상속분) 및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함

2. 비용 발생요인

- 감면대상 : 호우 피해 주민,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내용 : 취득세(상속분),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3. 비용 추계결과

- 추계 전제
 - 피해 주민(건축물주택 파손, 침수 등) :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사망자 및 유가족 : 취득세(상속분),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추계 결과 : 911건 148,581천원 정도
 - 취득세(상속분) : 17건 21,382천원 ※ 사망자 17명(청주시 15, 괴산군 2)
 - 주택 4건 15,009천원 / 토지 5건 2,447천원 / 자동차 8건 3,926천원

(단위 : 건, 천원)

계		청 주		괴 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21,382	10	17,814	7	3,568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894건 127,199천원
 - (피해 주민) 주택 401건 4,118천원 / 건축물 479건 122,835천원

(단위 : 건, 천원)

계		청 주		충 주		증 평		진 천		괴 산		음 성		단 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80	126,953	505	113,773	11	117	9	15	3	159	336	12,539	8	16	8	334

* 제천, 보은, 옥천, 영동은 해당사항 없음

- (사망자·유가족) 주택 14건* 246천원 * 청주시 소재 주택 14건

- 재원 조달 : 세액감면이므로 별도 재원 불필요

4. 연도별 비용추계서 : 한시적 감면으로 연도별 추계 내역 없음

작성자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이 정 노